제정 2021. 12. 23 조례 제2825호

전부개정 2023. 3.10 조례 제2946호

일부개정 2024. 4. 5 조례 제3101호

일부개정 2025. 4. 7 조례 제3229호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(이하"법"이라 한다)」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"시행령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원칙) 광명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 - 1.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.
 - 2. 경제·사회·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
 - 3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·부문·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.
 - 4.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.
 - 5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

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,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 공단,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시장은 시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24. 4. 5〉
- 제4조(시민의 책무)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,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 한다.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

- 제6조(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)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(이하 "광명시 비전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 -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광명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(이하 "감축목표"라 한다)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광명시 비전
 - 2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

- 3.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・흡수 현황 및 전망
- 4.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
- 5.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
- 6.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
- 제7조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,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하는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.
- 제8조(계획의 추진상황 점검)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.

제3장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
- 제9조(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 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광명시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
 - 3.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
 - 4.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
 - 5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
 - 6. 기후위기 적응대책(이하 "적응대책"이라 한다)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 - 7.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민·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

- 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민간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시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
- 2. 온실가스 감축,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, 에너지·자원 등 관련 분야 관계자
- 3. 그 밖에 탄소중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-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위원의 임기) 제10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
 - 4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
- ②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공동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,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탄소중립관련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 할 수 있다.
- 제16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

- **제17조(온실가스 감축 재정지원)**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. 〈개정 2025. 4. 7〉
 - 1. 시민·사업자·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, 조사·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·기술·재정 등의 지원
 - 2.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
 - 3.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
 - 4.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
 - 5. 청소년의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활동지원

-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
 - 6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18조(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)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제19조(신·재생에너지 전환)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도로·교통·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·체육관·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·재생에너지시설 보급·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
- 제20조(녹색건축물의 활성화)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 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·절 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·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1조(녹색교통의 활성화)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 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으며,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 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또는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친환경차 보급 확대)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·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 자동차(이하 "친환경차"라 한다)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,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23조(탄소흡수원 확대)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·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·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.
- 제24조(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)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·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·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·정확성 ·완전성·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지역 물관리 사업)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, 홍수,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26조(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38조1항에 따른 국가위기 적응대 책과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4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응대책 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.

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

- 제27조(기후회의 운영) ① 시장은 탄소중립 주요 시책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기후회의는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주요 시책에 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.
 - ③ 기후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- ④ 기후회의 참석자는 일반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한다.

⑤ 기후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·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고 구제적인 선정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4. 5]

- 제28조(협동조합의 활성화) ① 시장은 신·재생에너지의 보급·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・방법・절차는 시장이 정한다.

[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4. 4. 5]

- 제29조(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)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 립 지방정부 실천연대(이하 "실천연대"라 한다)에 참여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4. 4. 5]

- 제30조(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·홍보)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·소비·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 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(이하 "녹색생활"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·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「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4. 4. 5〕

제31조(국가 등과의 협력)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,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,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,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. 4. 5〕

- 제32조(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·지정·운영 등)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립 또는 지정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지원센터 운영계획
 - 2. 지원센터 인력 · 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
 - 3.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
 - 4.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「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. 4. 5〕

- 제33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기후대응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「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4. 4. 5〕

- 제34조(포상)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「광명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〈개정 2025. 4. 7〉
 -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속부서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〈신설 2025. 4. 7〉

「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4. 4. 5〕

부칙〈2023. 3. 10 조례 제2946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.

- 1. 「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
- 2. 「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」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또는 「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」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·대책으로 본다.

제4조(적용례)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 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.

부칙〈2024. 4. 5 조례 제3101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